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53
----------	-------

발의연월일 : 2026. 5. 13.

발 의 자 : 박해철 · 한민수 · 박균택
한준호 · 박 정 · 박지원
송옥주 · 이용우 · 정진욱
이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남구 등 도심지 학교 인근에서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 오피스’ 등으로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는 선정적인 노출 방송(BJ)을 진행하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는 ‘변종 유해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임. 현행법이 금지 시설을 업종 명칭 위주로 나열하고 있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장이 교육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유해 행위 확인 시 즉각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설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신설해서, 학교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10조의2 신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2호”를 ”제3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로서 노출, 선정적 방송 및 매체물 제작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시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긴급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를 위반한 행위 확인 시, 확정 판결 전이라도 즉시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설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10조의2(긴급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를 위반한 행위 확인 시, 확정 판결 전이라도 즉시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설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